

윤리 규정

2015년 10월 7일 제정

2023년 4월 11일 개정

(주)제이에스티나

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하여 제정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가치 판단 및 행동의 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금품'이란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회원권 포함), 물품 등을 말한다.
2. '접대'란 대가를 기대하여 Business Partner와의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 인적모임·교류에서 발생한 비용을 일방에게 부담시키거나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편의'란 금품, 접대를 제외한 숙박 및 교통 편 제공,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으로 상대방의 개인적 활동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4. '대가성'이란 금품, 접대·편의의 제공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수준'이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를 공정히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
6. '구성원'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말한다.
7. '친인척'이라 함은 본인을 기준으로 친가, 외가, 처가, 시가를 포함한 4촌 이내를 말한다.
8. Business Partner라 함은 회사와의 거래 또는 업무관계가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회사/단체 및 그에 속한 개인을 통칭한다.

제 2 장 공정한 업무 수행

제 3 조 【금품】

1.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Business Partner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 1)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법무감사팀에 통지한 후 해당 금품을 법무감사팀에 전달한다.
 - 2) 법무감사팀은 해당 금품을 Business Partner에게 반환한다. 단,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 3) 반환이 곤란한 경우 결연단체에 기증한다.
2. 구성원은 본인 및 동료의 경조사 발생 시 Business Partner에게 이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위 제3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1) 홍보 및 행사 기념품으로서 Business Partner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격이 3만원 미만인 물품

제 4 조 【접대 편의】

1.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Business Partner에게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Business Partner 접촉 시(방문, 접견, 식사 포함)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Business Partner와의 간소한 식사는 가능하나(당사가 비용 부담), 식사 후 추가적인 접대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 3) 특히, 골프를 포함하여 사회적 통념으로 접대·편의 수수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이해관계 상충】

1. 구성원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 1) 구성원이 업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①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개인사업 등을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Business Partner와 거래하는 행위
 - ③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 ④ Business Partner와 금전 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 ⑤ Business Partner로부터 대가성 있는 보상을 받는 행위
 - ⑥ Business Partner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
 - ⑦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 및 Business Partner와 거래하는 행위 등
 - 2)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회사가 구입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구매행위 등)

제 3 장 재산 보호

제 6 조 【재산보호】

1.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재산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재산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저가로 양도·대여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을 고가로 구입·차용하지 않는다.
3.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제 4 장 자기신고 및 제보

제 7 조 【처리 절차】

1. 업무와 관련하여 Business Partner에게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거나 이에 대한 제의를 받은 구성원은 해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법무감사팀에 자기 신고를 할 수 있다.
2. 구성원은 타 구성원의 윤리규정 위반사례를 인지한 경우 법무감사팀에 제보할 수 있다.
3. 법무감사팀은 윤리규정 위반관련 자기신고·제보가 있거나 위반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 8 조 【상벌사항】

1. 신고·제보된 사안이 대가성이 인정되고, 그 위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 회사 구성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해당 Business Partner에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해당 구성원은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수수한 금품, 접대·편의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의 반환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2. 자기 신고한 구성원이나 제보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해당 금품, 접대·편의의 경제적 가치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 9 조 【제보자 보호】

1. 자기 신고자나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은 보호해야 하며, 자기신고, 제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